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25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유성춘, 김민혁, 양동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현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제주 서귀포시 D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2. 6. 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오피스텔아파트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한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E의 대표이사란에는 'F(G)'라고 기재되어 있고, H와 I은 위 지주공동사업계약서에 E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 C는 2017. 3. 2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2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토지 대금을 평당 10,000,000원으로 정산해주되 잔금 640,000,000원은 사업 진행 완료시 신탁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 B 대표이사 G와 I 명의로 작성해주기로 약정하였고, I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며, G와 I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64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는 2017. 2. 28. 설립되었는바, G가 대표이사로, 피고 C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한편 J 주식회사는 2016. 12.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달 31.경 주식회사 K에 9,9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피고들의 대리인 I,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시공을 도급줄 것을 약속받고 I, H의 요청으로 I에게 2016. 11. 17.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설계비용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2017. 1.경 이 사건 공사 부지 위의 부속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비용 50,000,000원 및 철거비용 9,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승인을 인수하면서 E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을 부담한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I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철거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설계대금의 지급 내지 철거공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② I,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할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으며, ③ 피고 B가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고, ④ 피고들이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으며, ⑤ 원고가 E 내지 I과의 계약에 기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I이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철거 공사를 맡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I이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I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I, B와 사이에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제공하고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된 경우 수익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는 I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을 철거한 이후인 2017. 2. 28.경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I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고 철거공사를 할 당시 I이 피고들의 대리인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 승계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B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의 당사자인 E의 대표이사란에 'F(G)'라고 기재되어 있고, G는 이 사건 2 공동사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I이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에서는 E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2 공동사업계약에서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모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설령 E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가 B와 동일한 법인격 주체라고 인정할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 승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업자금 상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기재 및 I의 일부 증언과 I이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이 이 사건 1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I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시행한 철거비용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철거공사를 한 것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지 보건대, 원고가 철거공사를 한 것은 피고 B가 설립되기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피고 B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철거공사대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철거공사를 한 것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지 보건대, 원고가 E 내지 I와 사이의 계약에 기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제3자인 피고 C가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